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10-21

의 정 부 지 방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9구합15283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redacted]

담당변호사 [redacted]

피 고 [redacted]구청장

소송대리인 [redacted]

담당변호사 [redacted]

변 론 종 결 2020. 12. 1.

판 결 선 고 2021. 1. 26.

주 문

1. 피고가 2017. 11. 20.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2,003,890,900원(가산세 포함), 지방교육세 286,970,990원(가산세 포함), 농어촌특별세 56,903,57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10-21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B(이하 '이 사건 분할회사'라 한다)은 2012. 12. 20. 부동산 임대, 관리 용역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인데, 이 사건 분할회사에서 2016. 12. 1. [redacted]시 복합쇼핑몰 건설 프로젝트 사업 부문이 인적분할(이하 '이 사건 분할'이라 한다)되어 원고가 설립되었다(이 사건 분할회사는 2017. 3. 10. '주식회사 C'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나. 원고는 2016. 12. 1. 이 사건 분할을 원인으로 [redacted]시 [redacted]구 D 대지 91,870.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원고는 2016. 12. 9.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이 무상취득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여, 구 지방세법(2016. 12. 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 제2호 본문에 따라 3.5%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5,531,381,450원, 지방교육세 474,118,410원, 농어촌특별세 316,078,940원, 합계 6,321,578,8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redacted]시장은 원고에 대하여 지방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뒤, 2017. 8. 21. '비적격 인적분할로 분할신설법인이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유상취득에 해당한다'는 추징사유를 들어, 원고에게 취득세 등 합계 2,325,909,840원이 부과될 것이라는 취지로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였다.

라. 피고는 2017. 11. 20.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의 취득 당시 법인장부상 취득가격인 184,006,241,832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10-21

목에서 정한 4%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2,003,890,900원(가산세 포함), 지방교육세 286,970,990원(가산세 포함), 농어촌특별세 56,903,570원(가산세 포함), 합계 2,347,765,46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18. 2. 8.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9. 9. 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이 사건 분할을 원인으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것은 대가의 지급 없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무상취득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이 유상취득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이하 '제1주장'이라 한다).

2) 설령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유상취득한 것이라고 가정하더라도, 과세관청이 지난 약 20년간 인적분할을 통한 자산의 취득은 무상취득이라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해 온 점, 분할법인과 원고 등이 위 공적 견해를 신뢰하였고, 이러한 신뢰에 터잡아 분할 절차를 진행한 점, 그럼에도 피고가 종전 공적 견해에 반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위법하다(이하 '제2주장'이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10-21

다. 제1주장에 대한 판단

1) 구 지방세법 제6조 제1호는 취득세의 과세대상인 취득을 '매매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으로 정의하고 있다. 제11조 제1항은 부동산 취득의 세율을, 상속으로 인한 취득 이외의 무상취득은 1천분의 35(제2호), 제1호 내지 제6호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농지 외의 부동산에 대한 취득은 1천분의 40(제7호 나목)으로 각 정하고 있다.

한편, 회사는 분할에 의하여 1개 또는 수개의 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회사가 분할하는 때에는 분할계획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분할계획서에는 '분할에 의하여 설립되는 회사(이하 '분할신설회사'라 한다)의 상호, 목적, 본점의 소재지 및 공고의 방법', '분할신설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및 액면주식·무액면주식의 구분', '분할신설회사가 분할 당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종류 및 종류주식의 수, 액면주식·무액면주식의 구분', '분할회사의 주주에 대한 분할신설회사의 주식의 배정에 관한 사항 및 배정에 따른 주식의 병합 또는 분할을 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사항', '분할신설회사에 이전될 재산과 그 가액', '분할후 회사가 존속하는 경우 분할로 인하여 이전할 재산과 그 가액'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회사분할은 분할신설회사가 그 본점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효력이 발생되고, 분할신설회사는 분할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분할계획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다(상법 제530조의2 제1항, 제530조의3 제1항, 제530조의5 제1, 2항, 제530조의 10, 제530조의 11, 제234조).

2) 위 관련 법령들의 내용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을 제3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분할회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10-21

사에서 인적분할되어 그 분할을 원인으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 유상취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① 분할회사가 인적분할되어 단순분할신설회사가 설립되는 경우, 분할계획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단순분할신설회사가 발행하는 신주는 분할회사의 주주들에게 배정되고, 분할회사의 권리와 의무가 단순분할신설회사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된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설립 당시 발행한 주식 100%가 이 사건 분할회사 발행 주식 99.97%를 보유하고 있던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에게 배정되었고(이 사건 분할회사의 나머지 주식 0.03%는 F가 보유하고 있었다), 이 사건 토지가 원고에게 이전되었다.

② 피고는 이처럼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고 이 사건 분할회사의 주주인 E가 원고의 주식을 취득한 것은 서로 대가관계에 있는 것이므로, 현물출자와 동일하게 유상취득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상법상 회사의 분할은 조직재편의 수단으로서 조직법·단체법상의 절차인 점, 이에 반하여 현물출자는 자본조달의 수단으로서 개별자산의 출자행위인 점, 분할에 의한 승계는 별도의 개별적 이전절차 없이 법률상 당연이 이루어지는 포괄승계인데 반해 현물출자에 의한 승계는 개별적 이전절차가 필요한 특정승계인 점, 인적 분할 과정에서 신주발행은 분할계획서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으로 상법이 예정한 조직형태 변화에 수반된 절차에 불과한 점, 따라서 현물출자로 인해 회사가 자산을 취득하고 주주에게 주식을 교부하는 것은 자산취득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으나, 인적 분할로 인해 분할신설회사가 자산을 취득하고 분할회사의 주주에게 주식을 교부하는 것은 분할회사의 조직변경으로 그 주주가 분할신설회사의 주주로 지위가 변경되는 것에 따른 절차적 행위에 불과하다고 봄이 타당한 점, 나아가 분할신설회사는 분할과정에서 수립된 분할계획의 내용에 어떠한 의사표시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10-21

도 할 수 없으므로 분할신설회사가 분할로 취득한 자산에 대한 대가로 분할회사 주주에게 주식을 교부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고 E가 원고의 주식을 취득한 것이 서로 대가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인적 분할로 인한 자산취득 및 주식의 교부가 현물출자와 동일한 성격을 갖는다고 볼 수도 없다.

③ '비적격 인적분할로 분할신설법인이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유상취득에 해당한다'는 추징사유에 관하여 보건대, 구 법인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인적 분할의 적격요건은 법인세 혹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5. 12. 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의2 제3항 제2호에서 정하고 있는 취득세 면제사유에 관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인적 분할의 적격요건은 취득행위의 유·무상성과는 관련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분할이 인적 분할의 적격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유상으로 취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피고도 2020. 11. 17.자 준비서면에서 "인적 분할 적격요건 충족 여부와 유상취득 여부는 무관하고, '비적격 인적 분할을 원인으로 한 취득' 그 자체를 유상취득으로 보아 취득세 중과한 사례는 없다"고 진술하였다).

④ 피고는, 이 사건 분할의 경우 이 사건 분할법인의 모든 주주가 그 지분비율대로 원고의 주식을 취득한 것이 아닌 점, 이 사건 분할 전부터 투자자 유치계획에 따라 원고 주주의 변동이 예정되어 있었던 점, 인적 분할의 형식을 빌려 원고가 분할된 뒤 국민연금 등의 추가 지분투자를 통해 E의 지분이 감소되었고 신규 투자자에게 주식이 배정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분할은 단순한 회사 내부 조직변경이 아니라 투자자 모집을 통해 새로운 법인을 분할신설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10-21

가 이 사건 분할회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유상승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분할회사의 기존 주주 중 일부에게 원고의 주식이 배정되지 않았다는 사정 또는 이 사건 분할 전부터 투자유치계획이 세워져 있었고 이 사건 분할 후 증자를 통해 투자자들이 원고의 주식을 취득하였다는 사정 등이 모두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취득이 상법이 정한 분할과정에서 법률상 당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없고, E 혹은 신규 투자자들의 원고 주식 취득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것에 대한 대가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평가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들만으로, 이 사건 분할의 성질이 일반적인 인적 분할의 경우와 다르다거나 원고가 대가성 있는 거래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⑤ 피고는, 합병으로 인한 주식의 이전이 증권거래세법 제1조의2 제3항에서 정한 주권의 양도에 해당되므로, 인적 분할에 의한 자산의 취득 역시 유상취득으로 보아야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증권거래세법 제2조 제3항은 '이 법에서 양도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고, 합병으로 인한 주식의 이전은 위 규정에서 정한 주권의 양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5두1984). 그러나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에 대한 과세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증권거래세법의 규정 및 이에 대한 법리가 지방세법에서 정한 취득세, 특히 부동산의 취득세율에 관한 사안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은 여러 사정들에도 불구하고 합병으로 인한 주식의 이전이 증권거래세법에서 정한 양도에 해당한다는 점만을 근거로 하여 인적 분할로 인한 자산의 취득이 지방세법에서 정한 유상취득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10-21

⑥ 결국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취득과 E의 원고 주식 취득 혹은 원고에 대한 신규 투자자들의 원고 주식 취득 사이에 어떠한 대가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취득과 상환성 또는 대가성 있는 재산의 이전행위가 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취득이 유상취득의 실질을 갖는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무상취득으로 봄이 타당하다.

3)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취득이 유상취득임을 전제로 한 취득세 부과처분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원고가 위 취득세 납부의무자임을 전제로 한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 부분도 함께 취소되어야 한다(제1주장을 받아들이는 이상, 제2주장에 대해서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redacted]

판사 [redacted]

판사 [redacted]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10-21

별지

관계 법령

■ 구 지방세법(2016. 12. 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상속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 1천분의 23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28
2. 제1호 외의 무상취득: 1천분의 35.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의 취득은 1천분의 28로 한다.
3. 원시취득: 1천분의 28
5. 공유물의 분할 또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의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이전으로 인한 취득(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1천분의 23
6. 합유물 및 총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 1천분의 23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 1천분의 30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제150조(납세의무자)

지방교육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동산, 기계장비(제124조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 항공기 및 선박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납세의무자

■ 농어촌특별세법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10-21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5.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 또는 레저세의 납세의무자

■ 상법

제234조(합병의 효력발생)

회사의 합병은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가 그 본점소재지에서 전조의 등기를 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530조의2(회사의 분할·분할합병)

① 회사는 분할에 의하여 1개 또는 수개의 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제530조의3(분할계획서·분할합병계약서의 승인)

① 회사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하는 때에는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30조의5(분할계획서의 기재사항)

① 분할에 의하여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분할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분할에 의하여 설립되는 회사(이하 "단순분할신설회사"라 한다)의 상호, 목적, 본점의 소재지 및 공고의 방법
2. 단순분할신설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및 액면주식·무액면주식의 구분
3. 단순분할신설회사가 분할 당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종류 및 종류주식의 수, 액면주식·무액면주식의 구분
4. 분할회사의 주주에 대한 단순분할신설회사의 주식의 배정에 관한 사항 및 배정에 따른 주식의 병합 또는 분할을 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사항
5. 분할회사의 주주에게 제4호에도 불구하고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및 배정에 관한 사항
6. 단순분할신설회사의 자본금과 준비금에 관한 사항
7. 단순분할신설회사에 이전될 재산과 그 가액
8. 제530조의9 제2항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8의 2. 분할을 할 날

9. 단순분할신설회사의 이사와 감사를 정한 경우에는 그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10. 단순분할신설회사의 정관에 기재할 그 밖의 사항

② 분할후 회사가 존속하는 경우에는 존속하는 회사에 관하여 분할계획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10-21

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감소할 자본금과 준비금의 액
2. 자본감소의 방법
3. 분할로 인하여 이전할 재산과 그 가액
4. 분할후의 발행주식의 총수
5.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감소하는 경우에는 그 감소할 주식의 총수, 종류 및 종류별 주식의 수
6. 정관변경을 가져오게 하는 그 밖의 사항

제530조의10(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효과)

단순분할신설회사, 분할승계회사 또는 분할합병신설회사는 분할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다.

제530조의11(준용규정)

①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제234조, 제237조부터 제240조까지, 제329조의2, 제440조부터 제443조까지, 제526조, 제527조, 제527조의6, 제528조 및 제529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527조의 설립위원은 대표이사로 한다.

■ 구 법인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의 가액을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1.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분할하는 경우일 것(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일 것)
 가.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
 나.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 다만,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 분할법인등만의 출자에 의하여 분할하는 것일 것
2.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전액(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제44조 제2항 제2호의 비율 이상)이 주식으로서 그 주식이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에 따라 배정(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한 것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10-21

을 말한다)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을 보유할 것

3. 분할신설법인등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6. 12. 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의2(기업합병·분할 등에 대한 감면)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2.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각 호(물적분할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47조제1항을 말한다)의 요건을 갖춘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재산. 다만, 「법인세법」 제46조의3 제3항(물적분할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47조제3항을 말한다)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면제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

■ 증권거래세법

제1조의2(정의)

③ 이 법에서 "양도"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끝.